

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서

1. 상호명:

2. 사업장 소재지:

3. 대표자:

(생년월일:)

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제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4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농촌진흥청장 직인

